

# 2020년 한국저작권보호원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20.12.30.(수) / 감사팀

## <추진 경과>

- 2019.09.27. 2019년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 2019.10.16.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정
- 2019.11.26. 2019년 제1회 인권위원회 개최 및 위원 위촉식
- 2019.12.09. 인권경영 선포식 개최
- 2019.12.23. 인권경영 이행지침 일부개정
- 2020.01.30. 인권경영 추진 홈페이지 공시
- 2020.01.30. 2020년 갑질 근절 및 인권 보호 추진 계획 수립
- 2020.02.17. 갑질 및 인권침해신고센터 구축
- 2020.05.20. 갑질 위험 자가 진단 평가 실시
- 2020.06.15. 2020년 외부청렴도 평가 실시
- 2020.12.04. 인권경영위원회 내부위원 재위촉
- 2020.12.09. 인권영향평가 내부TF 회의 실시
- 2020.12.16. 인권영향평가 내부 보고서 작성
- 2020.12.24.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 2020.12.30. 2020년 인권경영 추진 결과 인권경영위원회에 보고
- 2020.12.31.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호원 누리집 공시

## □ 추진 근거

- (인권경영 도입)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인권경영 이행계획 수립
- (인권경영 이행지침) 지침 제23조, 제24조에 근거하여 업무 수행
- (경영평가 반영) 사회책임 경영(인권경영 노력과 활동) 평가지표 확대

## □ 인권영향평가 지표구성

- (점검 내용) 12개 분야, 107개 지표
- (점검 기간) 2020.12.9. ~ 2020.12.23

구분	인권영향평가	
	기관운영	사업운영
관련부서	경영지원팀, 정보화팀, 감사팀	침해예방팀 온라인대응팀
점검방법	체크리스트 서면평가(1차 내부평가, 2차 외부평가) * 외부평가 위원(2인) : 인권, 법률, 윤리경영 전문가	

○ (평가단 구성) 평가지표별 위원과 주관부서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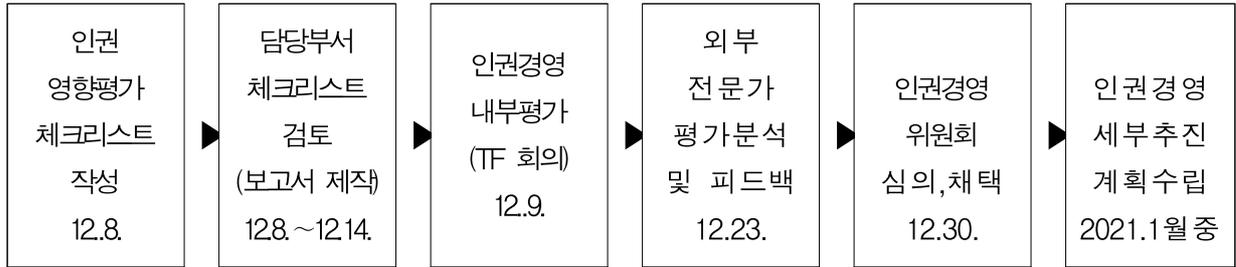
순번	지표 번호	지표별 분야	주관부서
1	1~15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인권 전체)	감사팀, 경영지원팀, 정보화팀
	16~19	인권경영 체제의구축(성희롱, 성폭력)	
2	20~29	고용상의 비차별	
3	30~4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4	44~53	강제 노동의 금지	
5	54~57	아동 노동의 금지	
6	58~66	산업안전 보장	
7	67~73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8	74~77	현지 주민의 보호(재산권 등)	
9	78~84	환경권 보장	
10	85~93	고객 인권보호	
11	94~100	공정 운영(민원)	침해예방팀
12	101~107	사회적 약자 편의 보상(재택모니터링)	온라인대응팀

□ 주요 내용

○ (평가 방법) 각 지표별 추진실적이 평가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지 평가

구분		소속		성명	▶ 인권경영 위원회에 최종보고
내부 위원 자가 진단 (1차)	기관 운영	감사팀		박○○	
		경영지원팀		이○○	
		정보화팀		변○○	
	사업 운영	온라인대응팀 (불법 저작물 모니터링 사업)		윤○○	
		침해예방팀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민원상담)		김○○	
외부위원 평가 및 피드백 (2차)	인권영향평가 (실무)전문가 *인권위 인권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로 위촉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 (교수)		
		한국○○○○ 윤리준법부	권○○ (변호사)		

- (내·외부 평가) 보호원 실정에 맞게 보완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서면평가 실시
  - (내부 평가) 지표별 이해도가 높은 내부 담당자를 배정하여 평가 실시
  - (외부 평가) 외부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기초로 최종 평가 실시



### □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

- (인권경영 측정 지표) 인권경영평가 지수를 점수화 하여 정량적 수준으로 진단하고, 강화해야 할 지표에 대한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주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 <점수 및 평가등급 체계>

구분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점수	2점	1점	0점	평가제외	

구분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평점	100점 ~ 80점	80점미만 ~ 60점	60점 미만

\* 평가가 불가능한 지표(정보없음, 해당없음)

### □ 평가 결과(요약)

구분	내부평가	외부평가		총 합계	등급
		외부위원 (인권정책·법률)	외부위원 (인권경영·법률)		
기관 운영	138	138	136	136	<b>나등급 159점 (74.2%)</b>
사업 운영	23	23	24	23	
총합계	161점	161점	160점	159점(74.2%)	

\* 외부평가위원의 점수 중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분야별(기관 및 사업운영) 낮은 점수를 채택하여 집계

## □ 시사점 및 환류방안

- 인권경영이 향후 정착되는 시기에 현장실사평가를 수행하는 방법 검토
- 채용공고문에 연소자 채용에 대한 금지 규정을 기재 필요성 검토
  - \* 근로기준법 64조상 15세 미만은 취업불가 관련 문구 기재 필요
- 보안 담당자는 별도의 인권교육 실시 검토
- 업무 쏠림 현상으로 직원 근로권의 침해 여부와 적정 업무량 점검
-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표 개발 검토
- 건물관리와 별도로 보호원이 자발적으로 안전 및 장애인 보호 정책에 관련된 노력 필요(물품구매 필요시 예산 가능 여부 검토)
- 체크리스트 활용 이해관계자의 안전 또는 환경의 법 준수 여부 점검
- 인권경영 수행 시 내외부 이해관계자(협력사, 내부직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향 검토
-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와 외부이해관계자(협력사 등) 인권경영 확대 필요 (예: 인권실천 서약서 징구, 인권교육 확대 등)에 대한 요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대상으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징구 필요성 검토

<b>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b>	
<p>당사는 한국직장보호원에서 시행하는 ○○공사(품역, 품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 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li> <li>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신체적 결함 성별 출생지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차별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습니다.</li> <li>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유계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협하다고 판단하여 직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환경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li> <li>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li> <li>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요청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 보장하겠습니다.</li> <li>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li> </ol> <p style="text-align: center;">... ..</p> <p style="text-align: center;">서약자 :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p>	<p>* <b>[참고]</b> 서울시를 포함한 여러 공공부문에서 계약 업무 추진 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징구하고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보장하도록 서약서를 요구하고 있음</p>

## □ 조치 사항

- 2019년 경영평가 결과 ‘평가 관련 피드백의 미흡함’ 지적에 대한 환류방안
- 내부직원 협력사(TF 활동 등)는 향후 2021년 청렴 마일리지에 반영
-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보호원 누리집에 공시(인권경영이행지침 제24조)